|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2002년 8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58호 발표,  2014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651호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의 상품상표 관련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제3조** 상표보유인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표가 유명상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 상품평의위원회는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심사, 처리의 수요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그 상표의 유명상황에 대한 인증을 해야 한다.  **제4조** 상표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지리표식은 상표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명상표 또는 집단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리표식을 증명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그 상품이 해당 지리표식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상표의 통제조직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그 상품이 해당 지리표식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정관에 따라 회원을 받아 들여야 하며, 해당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아도 해당 지리표식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제5조** 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등록상표를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수속을 하는 경우 대리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위탁서에는 대리내용과 권한을 명기해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탁서에는 위탁인의 국적도 명기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탁서 및 그 관련 증명서류의 공증, 인증수속은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표등록 출원 또는 상표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상표등록 신청인 또는 상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인 경우 신청서에 중국 경내 접수인이 책임지고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법률문건을 접수한다.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법률문건은 중국 경내 접수인에게 송달한다.  상표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중국에 일상주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지칭한다.  **제6조**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수속을 하는 경우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상표법과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 증거자료가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서, 증명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 업무직원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친척인 경우  (2)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수속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 상표법 제22조에 규정한 데이터 전자문서 방식으로 상표등록 출원 등 유관문서를 제출할 때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본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일자는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자에 준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인일자에 준하며; 소인일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실제 접수한 일자에 준하되 당사자가 실제 소인일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우정기업 이외의 택배기업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택배기업의 발송일자에 준하고; 발송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실제 접수한 일자에 준하되 당사자가 실제 발송일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일자에 준한다.  당사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보관된 서류의 기록에 준하고;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준하되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서류,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착오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 및 증명이 있으면 제외이다.  **제10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제반서류는 우편, 직접 교부, 전자문서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고; 전자문서 방식으로 당사자에 송달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 서류를 상표대리기구에 송달하면 당사자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송달한 일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당사자가 접수한 소인일자에 준하고; 소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만 15일이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되 당사자가 실제 접수일자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제외이며, 직접 교부하는 경우 교부일자에 준하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부하는 경우 서류가 발송된 날로부터 만 15일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되 당사자가 증명문건이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였다는 일자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제외이다. 서류를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고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만 30일 지나면 해당 서류는 당사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아래의 기간은 상표심사, 심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의 서류공고를 송달하는 기간  (2) 당사자가 증거를 보충하거나 서류를 보정하는 기간 및 당사자의 변경으로 재차 답변이 필요한 기간  (3) 출원일이 동일하여 사용증거 제출, 협상 및 추천에 필요한 기간  (4) 우선권의 확정에 필요한 기간  (5) 심사, 심리과정에서 안건신청인이 청구에 의하여 우선권리안건의 심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제12조** 본 조 제2항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상표법과 본 조례 규정의 각종 기한이 시작되는 날은 산출하지 아니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산출하는 경우 기한은 마지막 월의 상응한 일자가 기한 만료일이며; 해당 월에 상응한 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일이 기한 만료일이며;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영업일이 기한 만료일이다.  상표법 제39조, 제40조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법정일로부터 시작하여 기한은 마지막 월의 상응한 일이 기한 만료일이고 상응한 일이 없는 경우 해당 마지막 일이 기한 만료일이다.  **재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13조**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발표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표에 따라 유형별로 출원해야 한다.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매 건마다 상표국에 <상표등록 출원서> 1통, 상표도안 1통을 제출해야 하고; 칼라조합 또는 흑백도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칼라도안과 흑백원고를 1통을 제출하며; 칼라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흑백도안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도안은 명확하고 접착이 용이해야 하며 매끄럽고 내구성이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길이와 폭은 10cm보다 커서는 아니 되고 5cm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3차원 표식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성명하는 동시에 3차원 형태를 확정할 수 있는 도안을 제공해야 하며 제출한 상표도안은 최소 3면 투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칼라조합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성명하고 상표의 사용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소리표식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성명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소리견본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을 출원한 소리상표에 대하여 묘사하고 상표의 사용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소리상표에 대한 묘사는 오선보 또는 악보에 상표로서 작용하는 소리에 대하여 묘사하고 문자설명을 추가해야 하며; 오선보 또는 악보로 묘사할 수 없는 경우 문자를 사용하여 묘사할 수 있으며; 상표의 묘사와 소리견본은 일치해야 한다.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성명하는 동시에 주체자격 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제공해야 한다.  상표가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외국어가 포함되는 경우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의 명의는 그가 제공한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전 항에서 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상표국에 제출하는 변경, 양도, 갱신, 이의, 취소 등 기타 상표수속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15조**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명칭은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의 유형번호와 명칭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을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나열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상표등록의 출원 등 유관 서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타자 또는 인쇄해야 한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은 기타 상표수속의 처리에 적용한다.  **제16조** 동일상표의 등록을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기타 공유 상표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출원서에 대표인 1명을 지정해야 하며;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서에 1순위로 열거된 사람을 대표인으로 한다.  상표국과 상표평의위원회의 서류는 대표인에게 송달한다.  **제17조** 출원인이 그 명의, 주소, 대리인, 서류접수인을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을 삭감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그 상표등록 출원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국에서 양도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상표등록의 출원일은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상표등록 출원수속이 완비되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수리하고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하며; 출원수속이 완비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출원수속이 완비되거나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만 보정이 필요할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보정을 통지하여 통지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지정내용에 따라 보정하고 상표국에 반환하도록 한다. 규정된 기간 내 보정하고 상표국에 반환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보류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정하지 아니 하거나 요구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한다.  본 조 제2항의 수리조건에 관한 규정은 기타 상표수속의 처리에 적용한다.  **제19조** 2명 또는 2명 이상 출원인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시에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자체로 협상하여 상표국에 서면합의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사용하였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자체적으로 협상하고 서면협의를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미결인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추첨방식으로 출원인 1명을 확정하고 기타 등록출원을 기각한다. 상표국이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한다.  **제20조** 상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이 최초에 제출한 상표등록 출원서류 부본은 해당 출원을 수리한 상표주관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  **제21조** 상표국은 수리한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및 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 출원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초보심사를 하고 이를 공고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 출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기각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 출원을 기각하고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22조** 상표국이 하나의 상표등록 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기각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 중 초보심사된 일부 출원을 다른 하나의 출원에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출원은 기존 출원일자를 보류한다.  분할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국의 <상표등록 출원의 일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상표국에 분할출원을 제출한다.  상표국은 분할출원을 접수한 후, 기존 출원을 2건으로 분할해야 하며 분할된 초보심사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공고한다.  **제23조** 상표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이 상표등록 출원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설명 또는 수정해야 한다.  **제24조** 상표국의 초보심사를 거쳐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아래의 상표이의 관련 자료(각기 2부씩)를 제출하고 정본과 부본을 명시해야 한다.  (1) 상표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상표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우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라는 증명.  상표이의신청서는 명확한 청구와 사실의거가 있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5조** 상표국은 상표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수리조건에 부합하면 수리하고 출원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송한다.  **제26조** 상표이의신청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하며 이유를 설명한다.  (1)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주체자격과 이의이유가 상표법 제33조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명확한 이의이유와 사실,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4) 동일한 이의신청인이 동일한 이유와 사실, 법적근거로 동일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재차 제출하는 경우.  **제27조** 상표국은 상표이의자료 부본을 지체없이 이의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상표이의자료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하도록 한다. 이의대상자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답변 이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한다면, 상표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에 성명을 첨부하고 상표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유관 증거자료의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만기 후 형성되거나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이유로 만기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만기 후 제출한다면 상표국은 증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대질 후 채택할 수 있다.  **제28조** 상표법 제35조 제3항과 제36조 제1항이 지정하는 등록불허결정은 일부 지정상품의 등록불허결정을 포함한다.  상표국이 등록허가결정 또는 등록불허결정을 하기 전에 이의대상 상표의 등록공고가 발표된 경우 해당 등록공고는 취소한다. 심사결과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등록이 허가되면 등록허가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다시 공고한다.  **제29조** 상표등록 출원인 또는 상표등록자가 상표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국은 정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상표국이 비준한 뒤 관련내용을 정정하며; 정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상표국은 비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며 이유를 설명한다.  초보심사공고 또는 등록공고가 발표된 상표가 정정되는 경우 정정공고를 발표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갱신**  **제30조** 상표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유관 등기기관이 발급하는 변경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이 비준한 경우 상표등록인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며; 비준을 불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상표등록인은 모든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해야 하며; 일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부 시정을 통지하며; 만기 후 수정하지 않은 경우 변경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제31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 양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 양도신청 수속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상표국은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비준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등록상표 양도에서 상표등록인이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일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부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이 종료되어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등록상표의 양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한다.  **제32조** 등록상표전용권이 양도 이외의 상속 등 기타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의 당사자가 유관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건에 의하여 상표국에 가서 등록상표전용권 이전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일괄 이전해야 하며; 일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부 시정을 통지하며; 기한이 종료되어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등록상표 이전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상표이전 청구가 비준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한다.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을 이전 받은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가진다.  **제33조** 등록상표를 갱신등록해야 한다면 상표국에 상표갱신 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등록 갱신출원을 비준하는 경우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5장 상표 국제등록**  **제34조** 상표법 제21조에 규정된 상표 국제등록이란 <상표 국제등록 마드리드 협정>(이하 ‘마드리드 협정’)과 <상표 국제등록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및 <상표 국제등록 마드리드 협정 및 해당 협정에 관한 의정서의 공동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된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을 지칭한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출원은 중국을 원산국으로 하는 상표 국제등록출원과 중국의 지정된 영토확장출원 및 기타 관련 출원이 포함된다.  **제35조** 중국을 원산국으로 하여 상표 국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에 진실하고 유효한 영업소를 설립 또는 중국에 주소지가 있거나 중국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제36조 본 조례 제35조 규정에 부합되는 출원인은 상표가 이미 상표국에 등록된 경우 마드리드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을 처리할 수 있다.  본 조례 제35조 규정에 부합되는 출원인은 상표가 상표국에 등록되었거나 상표국에 상표등록 출원을 제출하고 수리된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중국을 원산국으로 상표의 국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상표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에 출원해야 한다.  중국을 원산국으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 국제등록의 사후지정, 포기, 말소는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청구해야 하며;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 국제등록의 양도, 삭감, 변경, 갱신은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국제사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중국을 원산국으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와 관련된 상표 국제등록의 사후지정, 양도, 삭감, 포기, 말소, 변경, 갱신은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국제사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상표의 국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관련출원을 처리하는 경우 국제사무국과 상표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출원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에서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국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상표의 국제등록 출원수속이 완비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않고 출원일은 보류하지 않는다.  출원수속이 완비되거나 출원서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보정하고 기한초과에도 보정하지 않는다면 상표국은 수리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한다.  **제41조** 상표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상표의 국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관련출원을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은 상표국의 비용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상표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종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수리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한다.  **제42조** 상표국은 마드리드 협정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규정된 기각기한(이하 ‘기각기한’)내 상표법과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국의 지정된 영토확장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상표국이 기각기한 내 기각 또는 일부 기각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확장출원이 비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 중국의 지정된 영토확장 출원인이 입체상표와 색채조합, 소리상표를 상표로서 보호를 청구하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국제사무국 국제등록부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표대리기구를 통해 상표국에 본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술된 기한 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영토확장출원을 기각한다.  **제44조**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상표의 국제등록 관련사항을 공고하며 상표국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중국의 지정된 영토확장출원에 대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국제상표공고>를 출판한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내 상표법 제33조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표국은 기각기한 내 이의신청 관련사항을 기각결정 형식으로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이의대상자는 국제사무국이 전파한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해야 하며, 답변서 및 관련 증거자료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표대리기구를 통해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 중국에서 보호를 받는 국제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부터 산출한다.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 등록인은 국제사무국에 갱신출원을 제출할 수 잇고 존속기간 내 갱신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상표국은 국제사무국의 갱신통지를 받은 후 법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국제사무국의 통지에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제등록상표를 말소한다.  **제47조** 중국의 지정된 영토확장출원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체약국 경내에 진실하고 유효한 영업소 또는 체약국 경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체약국 국민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일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통지발송일로부터 3개월 내 시정하도록 등록인에게 통지하며; 기한이 종료되어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로 인해 혼동 또는 기타 불리한 영향이 쉽게 유발되는 경우 상표국은 해당 양도의 중국 내 무효를 결정하고 국제사무국에 성명을 제출한다.  **제48조** 중국의 지정된 영토확장출원에서 삭감을 처리하고 삭감 후 상품 또는 서비스가 중국의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한다면 상표국은 해당 삭감의 중국 내 무효를 결정하고 국제사무국에 성명을 제출한다.  **제49조** 상표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출원 기각기한 종료일로부터 만 3년 후 상표국에 청구해야 하며; 기각기한 만료 시 기각 후 재심 또는 이의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등록결정 효력이 발생하고 만 3년 후 상표국에 청구해야 한다.  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출원 기각기한이 만료된 후 상표평의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기각기한 만료 시 기각 후 재심 또는 이의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 등록허가결정 효력이 발생한 후 상표평의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출원 기각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내 상표평의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기각기한 만료 시 기각 후 재심 또는 이의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등록허가결정 효력이 발생하고 5년 내 상표평의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유명상표 소유인은 5년의 시간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 상표법과 본 조례의 아래 조항의 규정은 상표의 국제등록 관련 사무의 처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상표법 제28조, 제35조 제1항의 심사 및 심리기한에 대한 규정  (2) 본 조례 제22조, 제30조 제2항  (3) 상표법 제42조 및 본 조례 제31조 상표 양도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청구 및 수속처리에 대한 규정.  **제6장 상표평의**  **제51조** 상표평의란 상표평의위원회가 상표법 제34조, 제35조, 제44조, 제45조, 제54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분쟁 관련 사무를 심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당사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상표평의를 청구하는 경우 명확한 청구와 사실, 이유,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며 상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의거하여 평의한다.  **제52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국의 상표등록출원 기각결정에 불복한 재심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상표국의 기각결정과 출원인의 재심 청구사실과 이유, 청구, 평가심사 시 사실상태에 대응하여 심리해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국의 상표등록출원 기각결정에 불복한 재심안건 심리에서 등록출원상표가 상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고 상표국이 상술한 조항에 근거하여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면 상술한 조항에 근거하여 출원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재심결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53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국의 등록불허결정에 불복한 재심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상표국의 등록불허결정과 출원인의 재심 청구사실 및 이유, 청구 또는 기존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응하여 심리해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국의 등록불허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기존 이의신청인에게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존 이의신청인의 의견이 안건의 심리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면 평의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이의신청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안건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4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법 제44조,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상표 무효선고 청구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답변사실, 이유, 청구에 대응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55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국의 상표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불복한 재심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과 출원인의 재심 청구사실, 이유 및 청구에 대응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56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국의 상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상표 취소 또는 유지결정에 불복한 재심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유지결정과 당사자의 재심 청구 시 근거사실, 이유 및 청구에 대응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57조** 상표의 평의청구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따라 상응한 수량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상표국의 결정서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서 부본도 동시에 첨부해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후 심의를 거쳐 수리조건에 부합하면 이를 수리하고;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보정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보정을 거치고도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상표평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기한이 종료되어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평의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의 평의청구를 수리한 후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면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제58조**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의 평의청구를 수리한 뒤 청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하도록 해야 하며; 기한종료 후 답변하지 않아도 상표평의위원회의 평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평의청구 또는 답변을 제출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한다면 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성명을 첨부하고 청구서 또는 답변서 제출일부터 3개월 내 보충해야 하며; 기한이 종료되어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만기 후 형성되거나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이유로 만기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만기 후 제출하는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증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대질 후 채택할 수 있다.  **제60조** 상표평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평의청구에 대한 구술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상표평의위원회가 평의청구에 대한 구술심리를 결정하는 경우 구술심리 15일 전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여 구술심리 시기와 장소, 평의인원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 답변해야 한다.  청구인이 답변도 하지 않고 구술심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평의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평의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답변도 하지 않고 구술심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결석평의를 할 수 있다.  **제61조** 출원인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에 앞서 상표평의위원회에 출원취하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취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평의절차를 종료한다.  **제62조** 출원인이 상표의 평의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평의청구를 재차 재출해서는 아니된다. 상표평의위원회가 상표의 평의청구에 대하여 재결 또는 결정을 하였다면 누구도 같은 사실과 이유로 평의청구를 재차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등록불허 재심절차를 거쳐 비준등록 후 상표평의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63조**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상품포장 또는 설명서나 기타 부착물에 ‘등록상표’를 명시하거나 등록표기할 수 있다.  등록표기는 ®을 포함한다. 등록표기의 사용은 상표의 우측상단 또는 우측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제64조** <상표등록증>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증>의 보충발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 <상표공고>에 분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손상된 <상표등록증>은 보충발급 청구시 상표국에 반납해야 한다.  상표등록인은 상표국의 상표변경, 양도, 갱신증명의 보충발급, 상표등록 증명의 발급이 필요하거나 상표출원인이 상표국이 발급하는 우선권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응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면 상표국은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상표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고지한다.  <상표등록증> 또는 기타 상표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국가기관 공문서 위조, 변조죄 또는 기타 죄에 대한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등록상표가 확정사용된 상품의 명칭이 통용되는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상표국은 수리 후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답변하도록 해야 하며; 기한종료 후 답변하지 않아도 상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6조**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등록상표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3년 연속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 관련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상표국은 수리 후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해당 상표의 취소청구 이전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기한이 종료되어도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무효 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인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전 항에서 지칭하는 사용한 증거자료는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와 상표등록인이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한 증거자료가 포함된다.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공고일로부터 만 3년 후 청구해야 한다.  **제67조** 아래의 상황은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1) 불가항력  (2) 정부의 정책성 제한  (3) 파산 및 청산  (4) 기타 상표등록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  **제68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취소하거나 등록상표 무효를 선고하며 취소 또는 무효선고 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국한되는 경우 이 부분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선고한다.  **제69조**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라이센서는 허가계약의 유효기간 내 상표국에 등록하고 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자료는 등록상표 사용허가인, 피허가인, 허가기한, 사용이 허가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등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70조** 등록상표전용권으로 질권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인과 질권인은 서면의 질권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국에 질권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제출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71조** 상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초과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를 명령하며, 판매정지를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상표보유인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유명상표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유명상표로 인증한다면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상표의 사용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적으로 사용한 상표로고를 말소 또는 소각하며; 상표로고와 상품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 말소하거나 소각한다.  **제73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 말소 또는 일부 지정상품의 상표등록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말소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존 <상표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 말소 또는 일부 지정상품의 상표등록 말소를 청구하고 상표국의 비준을 거쳐 말소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이나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의 일부 지정상품의 효력은 상표국이 말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종료한다.  **제74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본 조례 제73조 규정에 의거하여 말소되는 경우 기존 <상표등록증>을 폐기하고 공고하며; 일부 지정상품의 해당 상표등록을 취소하거나 상표등록인이 일부 지정상품의 상표등록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상표등록증>을 다시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8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75조**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공하는 창고보관, 운송, 우편, 인쇄, 은닉, 경영장소, 인터넷 상품거래 플랫폼 등은 상표법 제57조 제6항 규정된 편의제공 조건에 해당된다.  **제76조**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상품명칭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이 오도한 경우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제77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78조** 상표법 제60조 규정된 위법경영액의 산출은 아래의 요소를 고려한다.  (1)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판매가격  (2)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미판매 표시가격  (3)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실제판매가 확인된 평균가격  (4)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시장중간가격  (5) 권리를 침해한 자의 권리침해로 발생한 영업수입  (6) 기타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요소.  **제79조** 아래의 상황은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1) 물품공급단위가 합법적으로 기명날인한 공급리스트와 대금영수증 및 사실로 입증되거나 물품공급단위가 인가한 경우  (2) 공급판매 쌍방이 체결한 구매계약 및 실질적 이행이 입증된 경우  (3) 합법적인 구매세금계산서가 있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안건의 관련상품과 대응되는 경우  (4) 기타 안건의 관련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80조** 등록상표전용권의 상품을 침해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지만 해당 상품을 제공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판매정지를 명령하여 안건의 상황을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제공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한다.  **제81조** 안건의 관련 등록상표 소유권이 상표국 또는 상품평의위원회 심리 또는 인민법원의 소송 중이며 안건의 결과가 안건의 성질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상표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소유분쟁에 해당된다.  **제82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안건 조사처리 과정 중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권리인에게 안건과 관련된 상품이 권리인이 생산한 것인지 또는 생산이 허가된 상품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상표대리**  **제83조**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대리는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로 처리하는 상표등록 출원, 상표심의 또는 기타 상표사무를 지칭한다.  **제84조**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대리기구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고 상표대리업무를 취급하는 서비스기구와 상표대리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소가 포함된다.  상표대리기구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주관하는 상표사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등록해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기증명서류 또는 사법행정부문이 비준설립한 변호사 사무소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복사본은 보관하고  (2) 상표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책임인,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제출하며  (3) 상표대리업무인원 명단 및 연락처를 제출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대리기구 신용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상표대리기구가 상표법 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는 공개통보하며 신용기록에 기입한다.  **제85조**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대리업무인원은 상표대리기구에서 상표대리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을 지칭한다.  상표대리업무인원은 개인의 명의로 의뢰사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상표대리기구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출원서류는 해당 대리기구의 인감을 날인하고 관련 상표대리업무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87조** 상표대리기구가 대리서비스 이외의 기타 상표의 등록출원을 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아래의 행위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2호 규정된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 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사기, 허위홍보, 오해유발 또는 상업뇌물수수 등 방식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경우  (2) 사실을 속이고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사실을 속이고 허위증거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3) 동일한 상표안건에서 이익갈등이 있는 쌍방 당사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제89조** 상표대리기구가 상표법 제68조 규정된 행위를 행하는 경우 행위자 소재지 또는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조사처리하고 조사처리된 상황을 상표국에 통보한다.  **제90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상표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상표대리기구의 상표대리업무 수리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상표대리기구의 상표대리업무 수리를 6개월 이상 정지에서 영구정지까지 결정할 수 있다. 상표대리업무 수리를 정지하는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는 수리업무를 회복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의 상표대리업무 수리정지 또는 수리회복 결정은 공식사이트에 공고해야 한다.  **제9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대리업종조직의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92조** 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사용한 서비스 상표가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등록한 서비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1993년 7월 1일 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표국의 신규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최초 수리일까지 연속사용한 상표가 타인의 신규취급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최초 수리일 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상표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는 상표국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문건서식은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제정하고 발표한다.  상표평의위원회의 평의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94조**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설치하여 등록상표 및 관련 등록사항을 기재한다.  **제95조** <상표등록증> 및 관련증명은 권리자가 등록상표전용권을 향유하는 증빙이다. <상표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사항은 <상표등록부>와 일치해야 하고;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부>의 오류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외하고 <상표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96조** 상표국은 <상표공고>를 발표하고 상표등록 및 기타 관련사항을 발표한다.  <상표공고>는 종이형식 또는 전자형식으로 발표한다.  공고를 송달하는 이외에 공고내용은 발표일로부터 사회공중이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하게 해야 한다.  **제97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비용납부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문과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98조** 본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实施条例**  （2002年8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8号公布；  2014年4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51号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以下简称商标法），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有关商品商标的规定，适用于服务商标。  **第三条**　商标持有人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的，应当提交其商标构成驰名商标的证据材料。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应当依照商标法第十四条的规定，根据审查、处理案件的需要以及当事人提交的证据材料，对其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第四条**　商标法第十六条规定的地理标志，可以依照商标法和本条例的规定，作为证明商标或者集体商标申请注册。  　 以地理标志作为证明商标注册的，其商品符合使用该地理标志条件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要求使用该证明商标，控制该证明商标的组织应当允许。以地理标志作为集体商标注册的，其商品符合使用该地理标志条件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要求参加以该地理标志作为集体商标注册的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应当依据其章程接纳为会员；不要求参加以该地理标志作为集体商标注册的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的，也可以正当使用该地理标志，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无权禁止。  **第五条**　当事人委托商标代理机构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应当提交代理委托书。代理委托书应当载明代理内容及权限；外国人或者外国企业的代理委托书还应当载明委托人的国籍。  　 外国人或者外国企业的代理委托书及与其有关的证明文件的公证、认证手续，按照对等原则办理。  　 申请商标注册或者转让商标，商标注册申请人或者商标转让受让人为外国人或者外国企业的，应当在申请书中指定中国境内接收人负责接收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后继商标业务的法律文件。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后继商标业务的法律文件向中国境内接收人送达。  　 商标法第十八条所称外国人或者外国企业，是指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或者外国企业。  **第六条**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应当使用中文。  　 依照商标法和本条例规定提交的各种证件、证明文件和证据材料是外文的，应当附送中文译文；未附送的，视为未提交该证件、证明文件或者证据材料。  **第七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要求其回避：  　 （一）是当事人或者当事人、代理人的近亲属的；  　 （二）与当事人、代理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的；  　 （三）与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有利害关系的。  **第八条**　以商标法第二十二条规定的数据电文方式提交商标注册申请等有关文件，应当按照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的规定通过互联网提交。  **第九条**　除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情形外，当事人向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提交文件或者材料的日期，直接递交的，以递交日为准；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准；邮戳日不清晰或者没有邮戳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实际收到日为准，但是当事人能够提出实际邮戳日证据的除外。通过邮政企业以外的快递企业递交的，以快递企业收寄日为准；收寄日不明确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实际收到日为准，但是当事人能够提出实际收寄日证据的除外。以数据电文方式提交的，以进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电子系统的日期为准。  　 当事人向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邮寄文件，应当使用给据邮件。  　 当事人向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提交文件，以书面方式提交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所存档案记录为准；以数据电文方式提交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数据库记录为准，但是当事人确有证据证明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档案、数据库记录有错误的除外。  **第十条**　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的各种文件，可以通过邮寄、直接递交、数据电文或者其他方式送达当事人；以数据电文方式送达当事人的，应当经当事人同意。当事人委托商标代理机构的，文件送达商标代理机构视为送达当事人。  　 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向当事人送达各种文件的日期，邮寄的，以当事人收到的邮戳日为准；邮戳日不清晰或者没有邮戳的，自文件发出之日起满15日视为送达当事人，但是当事人能够证明实际收到日的除外；直接递交的，以递交日为准；以数据电文方式送达的，自文件发出之日起满15日视为送达当事人，但是当事人能够证明文件进入其电子系统日期的除外。文件通过上述方式无法送达的，可以通过公告方式送达，自公告发布之日起满30日，该文件视为送达当事人。  **第十一条**　下列期间不计入商标审查、审理期限：  　 （一）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文件公告送达的期间；  　 （二）当事人需要补充证据或者补正文件的期间以及因当事人更换需要重新答辩的期间；  　 （三）同日申请提交使用证据及协商、抽签需要的期间；  　 （四）需要等待优先权确定的期间；  　 （五）审查、审理过程中，依案件申请人的请求等待在先权利案件审理结果的期间。  **第十二条**　除本条第二款规定的情形外，商标法和本条例规定的各种期限开始的当日不计算在期限内。期限以年或者月计算的，以期限最后一月的相应日为期限届满日；该月无相应日的，以该月最后一日为期限届满日；期限届满日是节假日的，以节假日后的第一个工作日为期限届满日。  　 商标法第三十九条、第四十条规定的注册商标有效期从法定日开始起算，期限最后一月相应日的前一日为期限届满日，该月无相应日的，以该月最后一日为期限届满日。  **第二章　商标注册的申请**  **第十三条**　申请商标注册，应当按照公布的商品和服务分类表填报。每一件商标注册申请应当向商标局提交《商标注册申请书》1份、商标图样1份；以颜色组合或者着色图样申请商标注册的，应当提交着色图样，并提交黑白稿1份；不指定颜色的，应当提交黑白图样。  　 商标图样应当清晰，便于粘贴，用光洁耐用的纸张印制或者用照片代替，长和宽应当不大于10厘米，不小于5厘米。  　 以三维标志申请商标注册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说明商标的使用方式，并提交能够确定三维形状的图样，提交的商标图样应当至少包含三面视图。  　 以颜色组合申请商标注册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说明商标的使用方式。  　 以声音标志申请商标注册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提交符合要求的声音样本，对申请注册的声音商标进行描述，说明商标的使用方式。对声音商标进行描述，应当以五线谱或者简谱对申请用作商标的声音加以描述并附加文字说明；无法以五线谱或者简谱描述的，应当以文字加以描述；商标描述与声音样本应当一致。  　 申请注册集体商标、证明商标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并提交主体资格证明文件和使用管理规则。  　 商标为外文或者包含外文的，应当说明含义。  **第十四条**　申请商标注册的，申请人应当提交其身份证明文件。商标注册申请人的名义与所提交的证明文件应当一致。  　 前款关于申请人提交其身份证明文件的规定适用于向商标局提出的办理变更、转让、续展、异议、撤销等其他商标事宜。  **第十五条**　商品或者服务项目名称应当按照商品和服务分类表中的类别号、名称填写；商品或者服务项目名称未列入商品和服务分类表的，应当附送对该商品或者服务的说明。  　 商标注册申请等有关文件以纸质方式提出的，应当打字或者印刷。  　 本条第二款规定适用于办理其他商标事宜。  **第十六条**　共同申请注册同一商标或者办理其他共有商标事宜的，应当在申请书中指定一个代表人；没有指定代表人的，以申请书中顺序排列的第一人为代表人。  　 商标局和商标评审委员会的文件应当送达代表人。  **第十七条**　申请人变更其名义、地址、代理人、文件接收人或者删减指定的商品的，应当向商标局办理变更手续。  　 申请人转让其商标注册申请的，应当向商标局办理转让手续。  **第十八条**　商标注册的申请日期以商标局收到申请文件的日期为准。  　 商标注册申请手续齐备、按照规定填写申请文件并缴纳费用的，商标局予以受理并书面通知申请人；申请手续不齐备、未按照规定填写申请文件或者未缴纳费用的，商标局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申请手续基本齐备或者申请文件基本符合规定，但是需要补正的，商标局通知申请人予以补正，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30日内，按照指定内容补正并交回商标局。在规定期限内补正并交回商标局的，保留申请日期；期满未补正的或者不按照要求进行补正的，商标局不予受理并书面通知申请人。  　 本条第二款关于受理条件的规定适用于办理其他商标事宜。  **第十九条**　两个或者两个以上的申请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分别以相同或者近似的商标在同一天申请注册的，各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通知之日起30日内提交其申请注册前在先使用该商标的证据。同日使用或者均未使用的，各申请人可以自收到商标局通知之日起30日内自行协商，并将书面协议报送商标局；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商标局通知各申请人以抽签的方式确定一个申请人，驳回其他人的注册申请。商标局已经通知但申请人未参加抽签的，视为放弃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未参加抽签的申请人。  **第二十条**　依照商标法第二十五条规定要求优先权的，申请人提交的第一次提出商标注册申请文件的副本应当经受理该申请的商标主管机关证明，并注明申请日期和申请号。  **第三章　商标注册申请的审查**  **第二十一条**　商标局对受理的商标注册申请，依照商标法及本条例的有关规定进行审查，对符合规定或者在部分指定商品上使用商标的注册申请符合规定的，予以初步审定，并予以公告；对不符合规定或者在部分指定商品上使用商标的注册申请不符合规定的，予以驳回或者驳回在部分指定商品上使用商标的注册申请，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二十二条**　商标局对一件商标注册申请在部分指定商品上予以驳回的，申请人可以将该申请中初步审定的部分申请分割成另一件申请，分割后的申请保留原申请的申请日期。  　 需要分割的，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商标注册申请部分驳回通知书》之日起15日内，向商标局提出分割申请。  　 商标局收到分割申请后，应当将原申请分割为两件，对分割出来的初步审定申请生成新的申请号，并予以公告。  **第二十三条**　依照商标法第二十九条规定，商标局认为对商标注册申请内容需要说明或者修正的，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通知之日起15日内作出说明或者修正。  **第二十四条**　对商标局初步审定予以公告的商标提出异议的，异议人应当向商标局提交下列商标异议材料一式两份并标明正、副本：  　 （一）商标异议申请书；  　 （二）异议人的身份证明；  　 （三）以违反商标法第十三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五条、第十六条第一款、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为由提出异议的，异议人作为在先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的证明。  　 商标异议申请书应当有明确的请求和事实依据，并附送有关证据材料。  **第二十五条**　商标局收到商标异议申请书后，经审查，符合受理条件的，予以受理，向申请人发出受理通知书。  **第二十六条**　商标异议申请有下列情形的，商标局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一）未在法定期限内提出的；  　 （二）申请人主体资格、异议理由不符合商标法第三十三条规定的；  　 （三）无明确的异议理由、事实和法律依据的；  　（四）同一异议人以相同的理由、事实和法律依据针对同一商标再次提出异议申请的。  **第二十七条**　商标局应当将商标异议材料副本及时送交被异议人，限其自收到商标异议材料副本之日起30日内答辩。被异议人不答辩的，不影响商标局作出决定。  　 当事人需要在提出异议申请或者答辩后补充有关证据材料的，应当在商标异议申请书或者答辩书中声明，并自提交商标异议申请书或者答辩书之日起3个月内提交；期满未提交的，视为当事人放弃补充有关证据材料。但是，在期满后生成或者当事人有其他正当理由未能在期满前提交的证据，在期满后提交的，商标局将证据交对方当事人并质证后可以采信。  **第二十八条**　商标法第三十五条第三款和第三十六条第一款所称不予注册决定，包括在部分指定商品上不予注册决定。  　 被异议商标在商标局作出准予注册决定或者不予注册决定前已经刊发注册公告的，撤销该注册公告。经审查异议不成立而准予注册的，在准予注册决定生效后重新公告。  **第二十九条**　商标注册申请人或者商标注册人依照商标法第三十八条规定提出更正申请的，应当向商标局提交更正申请书。符合更正条件的，商标局核准后更正相关内容；不符合更正条件的，商标局不予核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已经刊发初步审定公告或者注册公告的商标经更正的，刊发更正公告。  **第四章　注册商标的变更、转让、续展**  **第三十条**　变更商标注册人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应当向商标局提交变更申请书。变更商标注册人名义的，还应当提交有关登记机关出具的变更证明文件。商标局核准的，发给商标注册人相应证明，并予以公告；不予核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变更商标注册人名义或者地址的，商标注册人应当将其全部注册商标一并变更；未一并变更的，由商标局通知其限期改正；期满未改正的，视为放弃变更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申请人。  **第三十一条**　转让注册商标的，转让人和受让人应当向商标局提交转让注册商标申请书。转让注册商标申请手续应当由转让人和受让人共同办理。商标局核准转让注册商标申请的，发给受让人相应证明，并予以公告。  　 转让注册商标，商标注册人对其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注册的相同或者近似的商标未一并转让的，由商标局通知其限期改正；期满未改正的，视为放弃转让该注册商标的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申请人。  **第三十二条**　注册商标专用权因转让以外的继承等其他事由发生移转的，接受该注册商标专用权的当事人应当凭有关证明文件或者法律文书到商标局办理注册商标专用权移转手续。  　 注册商标专用权移转的，注册商标专用权人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注册的相同或者近似的商标，应当一并移转；未一并移转的，由商标局通知其限期改正；期满未改正的，视为放弃该移转注册商标的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申请人。  　 商标移转申请经核准的，予以公告。接受该注册商标专用权移转的当事人自公告之日起享有商标专用权。  **第三十三条**　注册商标需要续展注册的，应当向商标局提交商标续展注册申请书。商标局核准商标注册续展申请的，发给相应证明并予以公告。  **第五章　商标国际注册**  **第三十四条**　商标法第二十一条规定的商标国际注册，是指根据《商标国际注册马德里协定》（以下简称马德里协定）、《商标国际注册马德里协定有关议定书》（以下简称马德里议定书）及《商标国际注册马德里协定及该协定有关议定书的共同实施细则》的规定办理的马德里商标国际注册。  　 马德里商标国际注册申请包括以中国为原属国的商标国际注册申请、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及其他有关的申请。  **第三十五条**　以中国为原属国申请商标国际注册的，应当在中国设有真实有效的营业所，或者在中国有住所，或者拥有中国国籍。  **第三十六条**　符合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申请人，其商标已在商标局获得注册的，可以根据马德里协定申请办理该商标的国际注册。  　 符合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申请人，其商标已在商标局获得注册，或者已向商标局提出商标注册申请并被受理的，可以根据马德里议定书申请办理该商标的国际注册。  **第三十七条**　以中国为原属国申请商标国际注册的，应当通过商标局向世界知识产权组织国际局（以下简称国际局）申请办理。  　 以中国为原属国的，与马德里协定有关的商标国际注册的后期指定、放弃、注销，应当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办理；与马德里协定有关的商标国际注册的转让、删减、变更、续展，可以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办理，也可以直接向国际局申请办理。  　 以中国为原属国的，与马德里议定书有关的商标国际注册的后期指定、转让、删减、放弃、注销、变更、续展，可以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办理，也可以直接向国际局申请办理。  **第三十八条**　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商标国际注册及办理其他有关申请的，应当提交符合国际局和商标局要求的申请书和相关材料。  **第三十九条**　商标国际注册申请指定的商品或者服务不得超出国内基础申请或者基础注册的商品或者服务的范围。  **第四十条**　商标国际注册申请手续不齐备或者未按照规定填写申请书的，商标局不予受理，申请日不予保留。  　 申请手续基本齐备或者申请书基本符合规定，但需要补正的，申请人应当自收到补正通知书之日起30日内予以补正，逾期未补正的，商标局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  **第四十一条**　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商标国际注册及办理其他有关申请的，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缴费通知单之日起15日内，向商标局缴纳费用。期满未缴纳的，商标局不受理其申请，书面通知申请人。  **第四十二条**　商标局在马德里协定或者马德里议定书规定的驳回期限（以下简称驳回期限）内，依照商标法和本条例的有关规定对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进行审查，作出决定，并通知国际局。商标局在驳回期限内未发出驳回或者部分驳回通知的，该领土延伸申请视为核准。  **第四十三条**　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人，要求将三维标志、颜色组合、声音标志作为商标保护或者要求保护集体商标、证明商标的，自该商标在国际局国际注册簿登记之日起3个月内，应当通过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向商标局提交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相关材料。未在上述期限内提交相关材料的，商标局驳回该领土延伸申请。  **第四十四条**　世界知识产权组织对商标国际注册有关事项进行公告，商标局不再另行公告。  **第四十五条**　对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自世界知识产权组织《国际商标公告》出版的次月1日起3个月内，符合商标法第三十三条规定条件的异议人可以向商标局提出异议申请。  　 商标局在驳回期限内将异议申请的有关情况以驳回决定的形式通知国际局。  　被异议人可以自收到国际局转发的驳回通知书之日起30日内进行答辩，答辩书及相关证据材料应当通过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向商标局提交。  **第四十六条**　在中国获得保护的国际注册商标，有效期自国际注册日或者后期指定日起算。在有效期届满前，注册人可以向国际局申请续展，在有效期内未申请续展的，可以给予6个月的宽展期。商标局收到国际局的续展通知后，依法进行审查。国际局通知未续展的，注销该国际注册商标。  **第四十七条**　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办理转让的，受让人应当在缔约方境内有真实有效的营业所，或者在缔约方境内有住所，或者是缔约方国民。  　 转让人未将其在相同或者类似商品或者服务上的相同或者近似商标一并转让的，商标局通知注册人自发出通知之日起3个月内改正；期满未改正或者转让容易引起混淆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商标局作出该转让在中国无效的决定，并向国际局作出声明。  **第四十八条**　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办理删减，删减后的商品或者服务不符合中国有关商品或者服务分类要求或者超出原指定商品或者服务范围的，商标局作出该删减在中国无效的决定，并向国际局作出声明。  **第四十九条**　依照商标法第四十九条第二款规定申请撤销国际注册商标，应当自该商标国际注册申请的驳回期限届满之日起满3年后向商标局提出申请；驳回期限届满时仍处在驳回复审或者异议相关程序的，应当自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准予注册决定生效之日起满3年后向商标局提出申请。  　 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申请宣告国际注册商标无效的，应当自该商标国际注册申请的驳回期限届满后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驳回期限届满时仍处在驳回复审或者异议相关程序的，应当自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准予注册决定生效后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  　 依照商标法第四十五条第一款规定申请宣告国际注册商标无效的，应当自该商标国际注册申请的驳回期限届满之日起5年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驳回期限届满时仍处在驳回复审或者异议相关程序的，应当自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准予注册决定生效之日起5年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对恶意注册的，驰名商标所有人不受5年的时间限制。  **第五十条**　商标法和本条例下列条款的规定不适用于办理商标国际注册相关事宜：  　 （一）商标法第二十八条、第三十五条第一款关于审查和审理期限的规定；  　 （二）本条例第二十二条、第三十条第二款；  　 （三）商标法第四十二条及本条例第三十一条关于商标转让由转让人和受让人共同申请并办理手续的规定。  **第六章　商标评审**  **第五十一条**　商标评审是指商标评审委员会依照商标法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第五十四条的规定审理有关商标争议事宜。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商标评审申请，应当有明确的请求、事实、理由和法律依据，并提供相应证据。  　 商标评审委员会根据事实，依法进行评审。  **第五十二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驳回商标注册申请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的驳回决定和申请人申请复审的事实、理由、请求及评审时的事实状态进行审理。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驳回商标注册申请决定的复审案件，发现申请注册的商标有违反商标法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和第十六条第一款规定情形，商标局并未依据上述条款作出驳回决定的，可以依据上述条款作出驳回申请的复审决定。商标评审委员会作出复审决定前应当听取申请人的意见。  **第五十三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不予注册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的不予注册决定和申请人申请复审的事实、理由、请求及原异议人提出的意见进行审理。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不予注册决定的复审案件，应当通知原异议人参加并提出意见。原异议人的意见对案件审理结果有实质影响的，可以作为评审的依据；原异议人不参加或者不提出意见的，不影响案件的审理。  **第五十四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规定请求宣告注册商标无效的案件，应当针对当事人申请和答辩的事实、理由及请求进行审理。  **第五十五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作出宣告注册商标无效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的决定和申请人申请复审的事实、理由及请求进行审理。  **第五十六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依照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作出撤销或者维持注册商标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作出撤销或者维持注册商标决定和当事人申请复审时所依据的事实、理由及请求进行审理。  **第五十七条**　申请商标评审，应当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申请书，并按照对方当事人的数量提交相应份数的副本；基于商标局的决定书申请复审的，还应当同时附送商标局的决定书副本。  　 商标评审委员会收到申请书后，经审查，符合受理条件的，予以受理；不符合受理条件的，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需要补正的，通知申请人自收到通知之日起30日内补正。经补正仍不符合规定的，商标评审委员会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期满未补正的，视为撤回申请，商标评审委员会应当书面通知申请人。  　 商标评审委员会受理商标评审申请后，发现不符合受理条件的，予以驳回，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五十八条**　商标评审委员会受理商标评审申请后应当及时将申请书副本送交对方当事人，限其自收到申请书副本之日起30日内答辩；期满未答辩的，不影响商标评审委员会的评审。  **第五十九条**　当事人需要在提出评审申请或者答辩后补充有关证据材料的，应当在申请书或者答辩书中声明，并自提交申请书或者答辩书之日起3个月内提交；期满未提交的，视为放弃补充有关证据材料。但是，在期满后生成或者当事人有其他正当理由未能在期满前提交的证据，在期满后提交的，商标评审委员会将证据交对方当事人并质证后可以采信。  **第六十条**　商标评审委员会根据当事人的请求或者实际需要，可以决定对评审申请进行口头审理。  　 商标评审委员会决定对评审申请进行口头审理的，应当在口头审理15日前书面通知当事人，告知口头审理的日期、地点和评审人员。当事人应当在通知书指定的期限内作出答复。  　 申请人不答复也不参加口头审理的，其评审申请视为撤回，商标评审委员会应当书面通知申请人；被申请人不答复也不参加口头审理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缺席评审。  **第六十一条**　申请人在商标评审委员会作出决定、裁定前，可以书面向商标评审委员会要求撤回申请并说明理由，商标评审委员会认为可以撤回的，评审程序终止。  **第六十二条**　申请人撤回商标评审申请的，不得以相同的事实和理由再次提出评审申请。商标评审委员会对商标评审申请已经作出裁定或者决定的，任何人不得以相同的事实和理由再次提出评审申请。但是，经不予注册复审程序予以核准注册后向商标评审委员会提起宣告注册商标无效的除外。  **第七章　商标使用的管理**  **第六十三条**　使用注册商标，可以在商品、商品包装、说明书或者其他附着物上标明“注册商标”或者注册标记。  　 注册标记包括和®。使用注册标记，应当标注在商标的右上角或者右下角。  **第六十四条**　《商标注册证》遗失或者破损的，应当向商标局提交补发《商标注册证》申请书。《商标注册证》遗失的，应当在《商标公告》上刊登遗失声明。破损的《商标注册证》，应当在提交补发申请时交回商标局。  　 商标注册人需要商标局补发商标变更、转让、续展证明，出具商标注册证明，或者商标申请人需要商标局出具优先权证明文件的，应当向商标局提交相应申请书。符合要求的，商标局发给相应证明；不符合要求的，商标局不予办理，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伪造或者变造《商标注册证》或者其他商标证明文件的，依照刑法关于伪造、变造国家机关证件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五条**　有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的注册商标成为其核定使用的商品通用名称情形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商标局申请撤销该注册商标，提交申请时应当附送证据材料。商标局受理后应当通知商标注册人，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2个月内答辩；期满未答辩的，不影响商标局作出决定。  **第六十六条**　有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的注册商标无正当理由连续3年不使用情形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商标局申请撤销该注册商标，提交申请时应当说明有关情况。商标局受理后应当通知商标注册人，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2个月内提交该商标在撤销申请提出前使用的证据材料或者说明不使用的正当理由；期满未提供使用的证据材料或者证据材料无效并没有正当理由的，由商标局撤销其注册商标。  　 前款所称使用的证据材料，包括商标注册人使用注册商标的证据材料和商标注册人许可他人使用注册商标的证据材料。  　 以无正当理由连续3年不使用为由申请撤销注册商标的，应当自该注册商标注册公告之日起满3年后提出申请。  **第六十七条**　下列情形属于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的正当理由：  　 （一）不可抗力；  　 （二）政府政策性限制；  　 （三）破产清算；  　 （四）其他不可归责于商标注册人的正当事由。  **第六十八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撤销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撤销或者宣告无效的理由仅及于部分指定商品的，对在该部分指定商品上使用的商标注册予以撤销或者宣告无效。  **第六十九条**　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的，许可人应当在许可合同有效期内向商标局备案并报送备案材料。备案材料应当说明注册商标使用许可人、被许可人、许可期限、许可使用的商品或者服务范围等事项。  **第七十条**　以注册商标专用权出质的，出质人与质权人应当签订书面质权合同，并共同向商标局提出质权登记申请，由商标局公告。  **第七十一条**　违反商标法第四十三条第二款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销售，拒不停止销售的，处10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二条**　商标持有人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的，可以向工商行政管理部门提出请求。经商标局依照商标法第十四条规定认定为驰名商标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反商标法第十三条规定使用商标的行为，收缴、销毁违法使用的商标标识；商标标识与商品难以分离的，一并收缴、销毁。  **第七十三条**　商标注册人申请注销其注册商标或者注销其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的，应当向商标局提交商标注销申请书，并交回原《商标注册证》。  　 商标注册人申请注销其注册商标或者注销其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经商标局核准注销的，该注册商标专用权或者该注册商标专用权在该部分指定商品上的效力自商标局收到其注销申请之日起终止。  **第七十四条**　注册商标被撤销或者依照本条例第七十三条的规定被注销的，原《商标注册证》作废，并予以公告；撤销该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的，或者商标注册人申请注销其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的，重新核发《商标注册证》，并予以公告。  **第八章　注册商标专用权的保护**  **第七十五条**为侵犯他人商标专用权提供仓储、运输、邮寄、印制、隐匿、经营场所、网络商品交易平台等，属于商标法第五十七条第六项规定的提供便利条件。  **第七十六条**　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将与他人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的标志作为商品名称或者商品装潢使用，误导公众的，属于商标法第五十七条第二项规定的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  **第七十七条**　对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任何人可以向工商行政管理部门投诉或者举报。  **第七十八条**计算商标法第六十条规定的违法经营额，可以考虑下列因素：  　 （一）侵权商品的销售价格；  　 （二）未销售侵权商品的标价；  　 （三）已查清侵权商品实际销售的平均价格；  　 （四）被侵权商品的市场中间价格；  　 （五）侵权人因侵权所产生的营业收入；  　 （六）其他能够合理计算侵权商品价值的因素。  **第七十九条**　下列情形属于商标法第六十条规定的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的情形：  　　（一） 有供货单位合法签章的供货清单和货款收据且经查证属实或者供货单位认可的；  　（二）有供销双方签订的进货合同且经查证已真实履行的；  　 （三）有合法进货发票且发票记载事项与涉案商品对应的；  　 （四）其他能够证明合法取得涉案商品的情形。  **第八十条**　销售不知道是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并将案件情况通报侵权商品提供者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  **第八十一条**　涉案注册商标权属正在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审理或者人民法院诉讼中，案件结果可能影响案件定性的，属于商标法第六十二条第三款规定的商标权属存在争议。  **第八十二条**　在查处商标侵权案件过程中，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要求权利人对涉案商品是否为权利人生产或者其许可生产的产品进行辨认。  **第九章　商标代理**  **第八十三条**　商标法所称商标代理，是指接受委托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办理商标注册申请、商标评审或者其他商标事宜。  **第八十四条**　商标法所称商标代理机构，包括经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从事商标代理业务的服务机构和从事商标代理业务的律师事务所。  　 商标代理机构从事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主管的商标事宜代理业务的，应当按照下列规定向商标局备案：  　 （一）交验工商行政管理部门的登记证明文件或者司法行政部门批准设立律师事务所的证明文件并留存复印件；  　 （二）报送商标代理机构的名称、住所、负责人、联系方式等基本信息；  　 （三）报送商标代理从业人员名单及联系方式。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商标代理机构信用档案。商标代理机构违反商标法或者本条例规定的，由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予以公开通报，并记入其信用档案。  **第八十五条**　商标法所称商标代理从业人员，是指在商标代理机构中从事商标代理业务的工作人员。  　 商标代理从业人员不得以个人名义自行接受委托。  **第八十六条**　商标代理机构向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提交的有关申请文件，应当加盖该代理机构公章并由相关商标代理从业人员签字。  **第八十七条**　商标代理机构申请注册或者受让其代理服务以外的其他商标，商标局不予受理。  **第八十八条**　下列行为属于商标法第六十八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以其他不正当手段扰乱商标代理市场秩序的行为：  　 （一）以欺诈、虚假宣传、引人误解或者商业贿赂等方式招徕业务的；  　 （二）隐瞒事实，提供虚假证据，或者威胁、诱导他人隐瞒事实，提供虚假证据的；  　 （三）在同一商标案件中接受有利益冲突的双方当事人委托的。  **第八十九条**　商标代理机构有商标法第六十八条规定行为的，由行为人所在地或者违法行为发生地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查处并将查处情况通报商标局。  **第九十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依照商标法第六十八条规定停止受理商标代理机构办理商标代理业务的，可以作出停止受理该商标代理机构商标代理业务6个月以上直至永久停止受理的决定。停止受理商标代理业务的期间届满，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应当恢复受理。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作出停止受理或者恢复受理商标代理的决定应当在其网站予以公告。  **第九十一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加强对商标代理行业组织的监督和指导。  **第十章　附　则**  **第九十二条**　连续使用至1993年7月1日的服务商标，与他人在相同或者类似的服务上已注册的服务商标相同或者近似的，可以继续使用；但是，1993年7月1日后中断使用3年以上的，不得继续使用。  　 已连续使用至商标局首次受理新放开商品或者服务项目之日的商标，与他人在新放开商品或者服务项目相同或者类似的商品或者服务上已注册的商标相同或者近似的，可以继续使用；但是，首次受理之日后中断使用3年以上的，不得继续使用。  **第九十三条**　商标注册用商品和服务分类表，由商标局制定并公布。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的文件格式，由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制定并公布。  　 商标评审委员会的评审规则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并公布。  **第九十四条**　商标局设置《商标注册簿》，记载注册商标及有关注册事项。  **第九十五条**　《商标注册证》及相关证明是权利人享有注册商标专用权的凭证。《商标注册证》记载的注册事项，应当与《商标注册簿》一致；记载不一致的，除有证据证明《商标注册簿》确有错误外，以《商标注册簿》为准。  **第九十六条**　商标局发布《商标公告》，刊发商标注册及其他有关事项。  　 《商标公告》采用纸质或者电子形式发布。  　 除送达公告外，公告内容自发布之日起视为社会公众已经知道或者应当知道。  **第九十七条**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应当缴纳费用。缴纳费用的项目和标准，由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价格主管部门分别制定。  **第九十八条**　本条例自2014年5月1日起施行。 |